

# 2025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 유형] 업무처리기준(안)

2025. 3.

"제충사다리를 이어주는,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학생진로장학부  
동의과학대학교 학생복지부



# 목 차

## I. 사업 개요

- 1. 지원 대상 ..... 1
- 2. 학생 선발기준 ..... 2
- 3. 지원 내용 ..... 4
- 4. 장학생 의무사항 ..... 4

## II. 사업 참여 신청

- 1. 학생 신청 ..... 5
- 2. 성적 산출 방법 ..... 6

## III. 장학생 심사 및 지급

- 1. 장학생 추천 ..... 8
- 2. 재단 최종 심사 ..... 12
- 3 대학 지급 ..... 13
- 4.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 16

## IV. 장학생 의무사항

- 1. 의무종사 이행 ..... 17
- 2. 직무기초교육 이수 ..... 28
- 3. 학적 변동 보고 ..... 31

## V.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1. 장학금 반환 ..... 33
- 2. 장학금 환수 ..... 38
- 3.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 43
- 4. 운영위원회 ..... 44

### 붙임 (별첨파일 참조)

- 붙임 1. 장학금 수혜 약정서 ..... 50
- 붙임 2.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57
- 붙임 3. 장학금 포기확인서 ..... 58
- 붙임 4.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 59
- 붙임 5. 2025년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 현황 ..... 62
- 붙임 6. 중소(중견)기업 등 기준 검토표 ..... 73
- 붙임 7. 표준 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공표) ..... 75
- 붙임 8. OJT 등 사내교육 이수확인서 ..... 76
-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77
- 붙임 10.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 85
- 붙임 11.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 86
- 붙임 12. 중소·중견기업 및 창업, 일자리 사업 관련 법조문 ..... 87

## I 사업 개요

### 1. 지원 대상

- (1) 대한민국 국적자로 2025-1학기 현재 2, 3, 4학년 정규학기 재학생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최대2개 학기) 지원 가능
- (2) 직전 학기 12학점(전공심화과정 6학점) 이수 및 총점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3)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는 제외
- (4)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기수혜대학 학적 상태가 졸업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전공심화·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졸업 시 사업 참여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전공심화 또는 편입 첫 학기에 신규장학생 신청 시 수학의 연장선으로 확인하여 지원 가능

####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제한 대상 >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종료자
- 동일 학기에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수혜한 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및 환수가 진행 중인 자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장학생 자격 유지자)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등
- 동일학기 타 학적으로 재단 내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자
- 과거 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I,II유형) 환수 대상자 중 잔여 환수대상 금액이 남아있는 자

## 2. 학생 선발기준

(1)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 추천 기준 합계 상위자 순으로 선발

(2)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계열/학과별로 안분해서 선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선발자로 추천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스마트리빙케어 학부) 신입생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계속장학생 대상자로 당해학기에 장학금 포기한 학생
- 계속장학생 중 전공심화과정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첫학기만 해당)

(3) 장학생 선발 기준

구분	학업성적		학생 취업 의지		저소득층 우대
	백분위 점수	배점(50점)	취업·창업지원형	배점(50점)	가산점(10점)
평가 기준	100점 ~ 97점	50	취·창업준비계획 <sup>1)</sup>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음 증빙자료 제출학생)
	96점 ~ 93점	48			
	92점 ~ 90점	46	청년/기술창업 또는 취·창업활동관련 자격증 <sup>2)</sup>	30	
	89점 ~ 87점	44			
	86점 ~ 83점	42	동점자 처리기준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생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름	
	82점 ~ 80점	40			
	80점 미만	30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2 참조)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 서류 미제출 및 사업계획서와 무관한 내용 입력시 0점 처리

2) 취·창업활동관련 자격증 여부(고교졸업 이후부터 신청일자 기준 현재 취득한 자격증 첨부)

3)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전문대 계속 장학생 중 전공심화과정·편입생은 추천기준과 관계없이 우선선발자로 추천 ※단, 전공심화·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최종 선발

< 저소득층 증빙자료 >

구분	자 격 명	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계급여수급자</li> <li>의료급여수급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li> <li>*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li> </ul>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급여수급자</li> <li>교육급여수급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 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상위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상위자활대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활근로자 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상위 계층 대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상위 계층 확인서</li> </ul>

※ 신청서류 장학생 본인 명의로 발급한 증빙자료만 인정 가능

※ 증빙자료 발급일은 1학기는 신청연도 1월 1일 이후,  
2학기는 신청연도 7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저소득층으로 인정 불가

### 3. 지원 내용

(1) 등록금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에 비례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종사해야 함

(2) 취·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창업지원금 미지급

####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유형 >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 4. 장학생 의무사항

① 의무종사 이행

- 사업 참여 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② 직무기초교육 이수

-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필수 이수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 학기 취·창업지원금 반환(환수) 조치됨**

③ 학적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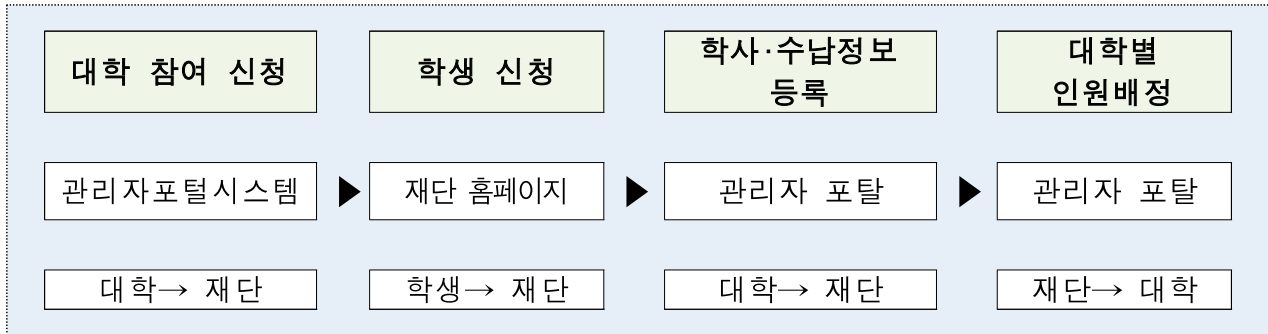
④ 정보제공 동의

-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수혜 학기별 가입,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 예외 인정

⑤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 II 사업 참여 신청

###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 신청 절차 >



### 1. 학생 신청

#### □ 신규 장학생

##### ① 공동인증서 발급

- 재단과 업무 제휴를 체결한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 공동인증서 기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
- 금융인증서 및 민간인증서(카카오톡 등)도 사용 가능

##### ② 재단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www.kosaf.go.kr)

- 경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 ③ 장학금 신청

- 경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 사다리)→ 신청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 사항 확인
- 학교 정보 및 개인 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 학자금 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진행

**【 장학생 신청 시 확인사항 】**

-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려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를 요함** (IV. 장학생 의무사항 내 <의무종사 인정 제외기업> 참고)
- 학과 예시 :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 장학생 신청 관련 참고 사항 】**

- ▶ (장학생 선정절차) 장학금 신청 완료→ 대학 추천 및 심사→ 장학생 선정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대학추천 불가
- ▶ (계속장학생)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
  - 계속장학생의 경우, 학생 신청 절차는 생략되나, 지원 학기마다 대학의 추천 및 심사를 거쳐야만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됨

**2. 성적 산출 방법**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성적 산출 방법 >**

◆ 희망사다리장학금 심사를 위한 성적 산출 기준은 다음 상세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사항은 대학의 학칙을 준용

구분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이수 학점 및 백분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li> <li>• 백분위 성적 산출 시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산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li> <li>•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li> </ul>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 성적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b>성적산출여부 : N</b>)</li> <li>-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li> <li>※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li> <li>•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li> <li>- 편입생의 경우 학사원장에 <b>성적유형 : '고교내신'</b>, <b>성적 유형통과여부 : 'y'</b>로 입력</li> </ul>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li> <li>(예) 재학생이 직전학기 전체를 포기하거나 유급(성적미달로 인한 유급포함)되었을 경우, 학적</li> </ul>



구분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경우	상태 '재학중', 해당학기 본 성적 입력하여 성적 심사 진행 ※ 본 성적이 심사 기준 통과 시 장학금 지원 가능(해당 성적증빙 자료 보관)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li> <li>※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li> </ul>
직전학기 성적 산출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학기 성적 산출 시 <b>대학 추천 일정</b>을 기준으로 적용                          (예) 직전학기 교환학생 후 복귀했을 경우, 교환학기 성적이 대학 추천 기간 내에 산출 시 직전학기 성적으로 적용, 교환학기 성적이 대학 추천 기간 이후 산출 시 이용 가능한 최근 학기 성적 적용</li> <li>※ 상기 예시 이외의 실습 등 기타의 사유로 성적 산출이 늦어지는 경우 장학금 지급 일정 내에 산출 시 해당 사항 적용 원칙</li> <li>※ 해당 증빙 자료 보관(성적 산출 시점 등)</li> </ul>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 삭제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장학금 심사</li> <li>※ 해당학생의 전과 전후 성적 증빙자료 보관 필요</li> </ul>
선택적 패스제 도입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적 패스제'* 도입 시, 원점수 기준으로 성적 심사</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선택적 패스제) 성적 공시 이후, 부여된 성적(A~D)을 이수 여부(예시: Pass/Non pass)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대학은 반드시 선택 이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성적을 입력</li> <li>※ 향후에도 직전학기가 선택적 패스제 적용 학기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원점수로 입력</li> <li>※ 누적 성적 산출 시에도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함이 원칙임. 단, 산출이 불가할 경우 학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성적을 입력</li> <li>※ 학사 원장의 성적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재단 내 학자금 지원 사업은 위 기준을 공통 적용</li> <li>- 해당 대학은 동 점수를 향후 현장 점검 등에 대비하여 보관 필요</li> <li>※ 기존 Pass/Non pass 과목에 대한 처리는 기존 지침에 따름</li> </ul>

### Ⅲ 장학생 심사 및 지급

#### 1. 장학생 추천

##### (1) 장학생 지원기준

- (학적기준)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범위(①, ②)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성적기준)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기준으로 적용
  - \* 정규학기 내 졸업을 장려하기 위한 학기당 최소 이수수준으로, 대학이 교내 장학금 지급 시 활용하는 성적기준과 유사한 개념(최소 수강신청 학점과 다름)
  - 졸업 학기 학생은 직전 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 (수혜횟수) 선발 학기 소속학과 학년제별로 장학금 수혜 횟수 제한
  - 재학생의 현재 학제 기준으로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1유형) 장학금 수혜 횟수가 정해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고유 수혜 횟수(①) 및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횟수(②)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재단 장학금 중 국가근로장학금 및 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수혜 횟수에서 제외됨
  -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됨
  - 신규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대학은 이연 장학금(전액)을 반환처리 후 학생에게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
    - 이연장학금 미반환 시 수혜 횟수 이중 산정될 위험이 존재함

【예시】 '24-1학기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등록휴학 등의 사유로 장학금이 이연되고, '24-2학기에 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선발로 장학금 추가 수혜 시 → 한 학기분의 장학금을 수혜하였으나 총 수혜횟수는 2회(1·2학기)로 산정됨

**< 학제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횟수 >**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일반대	희망사다리 1유형 수혜 횟수(①)	-	-	4회	6회	8회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②)			8회	10회	12회
전문대	희망사다리 1유형 수혜 횟수(①)	2회	4회	6회	8회	10회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②)	4회	6회	8회	10회	12회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최대 2회로 산정함

- (기타사항)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자(포기자 포함) 및 수혜 종료자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 심화 과정 및 4년제 진학(편입)한 경우, 전공 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 해 지원 가능
  - 수혜 종료자 : 장학금 수혜 횟수 초과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종료된 자

**(2) 대학별 신규장학생 추천**

- (추천기준) 대학에서는 ①학생의 성적, ②중소기업 취·창업 의지를 반드시 평가하여 신청 학생별 우선순위를 산정하여야 함
  - 필수 평가 항목(①, ②)별 세부 배점은 대학에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평가 가능
    - 평가 배점 : 학업성적 50점, 취창업의지 50점(준비계획 20점, 활동 내역 30점)
  -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 자체 기준에 포함하여 마련하되, 학자금 지원구간 등 소득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은 자체 기준으로 사용 불가
  - 신청 인원이 재단의 배정 인원 이하인 경우, 우선순위 산정 불필요
  - 특정 계열·학과로 장학생이 편중되지 않고, 정규학기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추천되도록 권장

### (3) 계속장학생 심사

- (추천기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장학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도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함
  - 계속장학생 대상자의 지원 횟수에 이상이 있을 시, 재단으로 확인
    - \* 계속장학생의 학적·성적은 대학에서 등록한 학사정보이므로 이상이 있는 경우, 대학에서 수정 등록 필요
- (추천절차) 해당학기 계속장학생 대상자 명단 중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을 재단으로 추천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장학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도 지원기준 미충족 시 계속장학생 선발 불가
  - 대학은 추천 전 계속장학생 대상자 명단에 해당학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 중소기업 취업연계 계속장학생 추천 경로 】

- ▶ 추천 경로 : 관리자 포탈 접속→ 장학→ 희망사다리장학금→ 계속장학생관리→ 계속지원 대상자 추천→ 상품유형 및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추천 및 제출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기준 >**

**□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 (정의) ①장학생 지원기준 미충족, ② 장학생 본인 포기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 (효과)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이후에도 졸업 후 의무종사는 유효하고, 지원받는 장학금(등록금, 취·창업지원금)은 재단에 반환해야 함

**□ 자격상실에 따른 장학금 반환 방법**

- 졸업 유예(학위 취득 유예) 등 학교에 적(籍)만 두고 있는 경우 자격 상실되며, 수혜금액에 대한 반환 또는 졸업 후 의무종사 중 선택
- 제적·자퇴으로 인한 자격 상실 시에는 의무종사 불가하며 기수혜금액 전액 반환

## 2. 재단 최종 심사

### □ 대학별 추천명단 확인

- (추천정보 재확인) 추천학생의 학적, 성적 등을 재심사
  - 대학추천 완료\* 후 학적정보 변경 시, 변경 된 기준으로 재심사
  - \* 추천자 명단이 관리자포털 상 '제출완료'로 변경된 경우만 인정
- (지원제한 사항 확인) 추천학생의 장학생 선발 결격 사유 확인
  - 지원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 선발 제외

### □ 대상자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보증가입 확인) 대학의 추천(제출)이 완료된 학생은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필요
  - 재단이 공지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 되지 않은 학생은 탈락 처리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 예외 인정

### □ 장학생 추가 선발

- (시기 및 방법) 장학생 최종 선발인원이 최초 배정인원 이하여야 함
  - 잔여 예산 고려 추가선발 가능 시, 대학별 신청자 비율이 높은 순으로 별도 추가 선발 가능

### 3. 대학 지급: 재단→ 대학

#### □ 학생 수납원장 등록

- (학생별 정보입력) 대학은 개인별 등록금액이 확정되면 학생정보, 등록금액, 수납계좌, 장학금액 등을 수납원장에 등록

원장 항목	세부 내용
학생정보	학과, 학년, 학번 등록납부대상정보 등 학사정보
장학금정보	정부 및 지자체 장학금,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등
등록금정보	등록금, 입학금, 선택경비 등

#### □ 대학 수납계좌 등록

- (전용계좌 개설) 대학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전용 수납계좌 개설 후 재단에 공문으로 등록 요청
  -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 전용계좌 기 등록대학은 계좌변경 시에만 재단으로 계좌변경 요청
  - 장학금의 정상 지급을 위해 대학 계좌의 임시휴면 여부 등 확인 필수

#### □ 대학 지급

- (등록금) 학생의 수납원장과 중복지원 정보를 확인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학으로 장학금(재단 내 대출상환금 제외) 지급
  - (취·창업지원금) 학생의 직전 학기 의무교육이수 여부 확인 후 이수가 완료된 학생에 한해 대학으로 장학금 지급
    - 신규장학생의 경우 해당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지원금 지급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장학생은 재단으로 해당학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함
- \* '19년 1학기 이전 선발자는 변경 전 업무처리기준 적용되며,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해당 학기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취·창업지원금도 제한됨

□ 장학금 지급 유의 사항

- (이연불가)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이 발생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등록금 + 취창업지원금) 반환
- (차액지급 허용) 신규장학생에 한해 등록금 범위 내 차액지급을 허용하며, 계속장학생은 전액 지급 원칙
- (휴학자 처리) 재단이 인정한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 학기부터 장학금 지원 재개
  -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학기)까지 인정
- (미지급 사유 확인) 대학은 심사통과자의 장학금 미지급 시 사유 확인 후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학기 내 조치
- (이자발생) 장학금 수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환 불필요 등

**【 심사통과자의 미지급 사유 】**

- ① 장학금 지급 시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자
- ② 당해학기 수혜한 후 지급 교내장학금을 중복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지급 보류된 자
  - ※ 교내장학금 지급 후 5영업일 이내에 중복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수납원장에는 별도 입력 불필요 → 최종 지급차수에 조건부 지급 →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학이 즉시 재단으로 반환
- ③ 당해학기 수혜한 교외 장학금이 수납원장에 반영되지 않아 지급 보류된 자
  - ※ 수납원장 기준으로 지급가능금액 산출하므로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등록된 교외 장학금과 동일한 금액을 수납원장에 입력해야 차액 지급가능
- ④ 장학금 지급(재단→대학) 전 학적 변동자(학사원장 기준)
- ⑤ 학사 및 수납원장 불일치 또는 수납원장 미존재자
- ⑥ 당해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여 장학 및 대출을 수혜한 자



## 4.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 (1)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금지

- (정의)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
  - 직접 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 기간 내 중복참여가 불가하며, 기타 참여 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로 문의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 타 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

<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판단 기준 >

사업명	중복참여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의무종사 종료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 의무종사 완료 혹은 장학금 반환 이후에는 가입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는 허용되나, 각종 수당은 중복 수혜 불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희망사다리유형 장학금 수혜자는 사업 동시 참여 불가 - 의무종사 완료 혹은 장학금 반환 이후에는 사업 참여 가능 - 세부 사항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얼에 따름

- (사업의 참여)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참여 등록
  - 신규장학생은 장학금 지급 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이하 일모아시스템)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유형) 참여자로 일괄 등록됨(지원금액 포함)
  - 사업의 참여기간은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까지로 함
 

\* 일모아시스템에 최초 기간 등록 시, 종료일은 보증보험기간 만료일로 함  
-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해당 학기 보증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등록  
- 실제 의무종사를 완료할 경우, 의무종사 종료일로 변경 처리 가능

    - 해당 정보는 타 일자리 사업 신청 시 중복지원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 자료로 관계기관에서 자유롭게 조회가 가능함
- (사업의 종료) 장학생은 다음의 경우에 사업 참여 종료처리가 됨
  - 장학금 전액 반환 및 환수: 중도포기,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수혜금액 전액 반환승인, 또는 환수 완료 시 참여 시작일을 중도 이탈일로 하여 중도이탈 처리(사업 미참여)
  - 의무종사 완료: 의무종사 종료일자를 중도이탈일로 하여 중도이탈 처리(사업참여 종료)

## (2)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 (정의) 한 학생이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한 경우

### <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

구분	종류
<b>학자금대출 및 장학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li> <li>▶ 타 기관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기업, 대학 등</li> </ul> </li> </ul>
<b>중복지원 예외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가성 장학금 : 근로장학금, 연구활동 보조비(BK21 등), 멘토링장학금 등</li> <li>② 「군장학생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고등학교 장학생의 군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비 무상보조,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li> </ul> </li> <li>③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li> <li>④ 그 외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중 ①, ②, ③에 준하는 성격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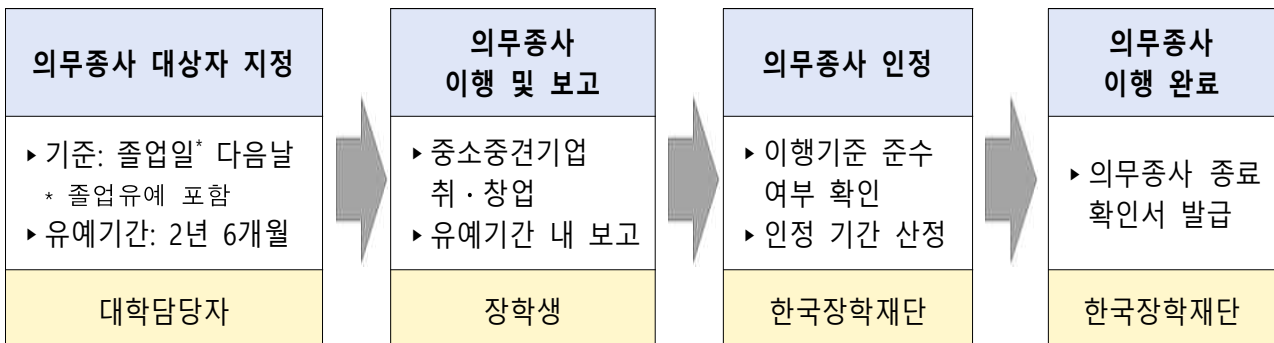
## IV 장학생 의무사항

### 1. 의무종사 이행

#### (1) 의무종사 개요

- (의무종사) 의무종사란, 장학생이 장학금 수혜 횟수 및 지원 유형에 따라 졸업 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하는 것
  - 의무종사 대상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행한 의무종사만 인정
    -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 (취업) 재단이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된 근로소득자 신분으로, 4대보험 가입 정보를 통하여 근로 사실·기간 확인이 가능한 경우
  - 근로소득자 신분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한 예외 사례에 한하여, 근로소득세 증빙서류로 근로소득자 신분을 확인
  - 근로소득자 신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취업으로 보지 않음
- (창업) 창업주로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단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 장학생 본인이 개업일 당시의 창업주에 해당
    - 창업주\*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확인되어야 함
    - \* 공동 사업주(대표자)인 경우를 포함
  - 매출액 증빙자료를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 운영 확인

####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의무종사 이행 절차 >



## □ 의무종사 대상자 지정

- (기준) 소속 대학이 등록한 장학생의 졸업일(졸업유예일) 다음 날부터 의무종사 대상자로 지정됨
  - 단, 의무종사 보고는 소속 대학이 한국장학재단 관리자 포털에 졸업일(졸업유예일)을 등록한 시점 이후부터 가능
  - 장학생이 전문대 전문학사 졸업 이후, 전공 심화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졸업(졸업유예) 등록은 장학생의 소속 대학별 학사업무 기준에 따름
  - 진학에 따른 졸업 정보가 다수로 확인될 경우, 졸업일 별로 의무종사 관리카드를 별도 관리함 (유예만료일 등 별도 설정)
- (효과) 의무종사자 대상자로 지정되면 의무종사 유예기간(900일) 내로 의무종사를 완료해야 함
  - 유예기간(유예만료일) 경과 이후 이행한 의무종사는 불인정

## □ 의무종사 이행 심사

- 장학생은 졸업 후 의무종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종사 이행에 따른 의무종사 보고 의무가 존재함
  - 장학생은 지원유형에 따라 중소기업(중견)취·창업과 의무종사 일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재단은 ①고용정보 DB연계, ②재직기업 정보 확인, ③부모기업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자동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단, 자동 심사는 의무종사 이행 심사의 보조 수단이며 의무종사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장학생은 의무종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 (2) 의무종사 인정

### □ 의무종사 인정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中 매출액 5천억 미만
- ※ 의무종사 대상 기업 여부는 최초 입사 시 기업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기업현황 변동내역은 고려하지 않음**

- 재단이 정한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종사 불인정

□ 의무종사 이행 기준

-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것
  - 의무종사일 : 졸업한 이후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한 기간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의무종사 이행으로 인정
- [창업지원형] 의무종사 기간만큼 중소기업 창업을 유지하는 것
  - 의무종사일 :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유지 기간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의무종사 이행 기준 >

구분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인정 시점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장학생 선정일 다음 날부터
인정 기간	중소·중견기업 근무 기간	창업 유지 기간 (매출액 기준 충족 필요)
이행 완료	의무종사 기간만큼 중소·중견 기업 근무 혹은 창업 유지	
비고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의 의무종사만 인정	

【창업지원형 매출액 인정 기준】

▶ '24년 이후 신규 장학생

- (1) 매출액 확인 및 의무종사 심사는 연 단위로 진행
- (2) 연도별 매출액 713,102\*원 당 의무종사 30일 인정
  - 매출액 713,102원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30일 단위로 인정 (713,102원 미충족 시 일할 계산 없음)

< 연간 총 매출액에 따른 의무종사 인정 예시 >

구분	매출발생일	매출액(원)	의무종사 인정 가능일수		심사의견
			2024년	2025년	
①	2024.12.8	3,000,000	120일	0일	2024년 총 매출액이 2,852,408원(713,102원 x 4회) 이상임으로 120일 (30일 x 4회) 인정
	2025.3.1.	800,000	0일	30일	2025년 총 매출액이 713,102원(713,102원 x 1회) 이상임으로 30일(30일 x 1회) 인정
②	2024.12.10.	600,000	0일	0일	연도별(2024년, 2025년) 매출액이 713,102원 미만임으로 의무종사 인정 불가
	2025.1.5.	200,000	0일	0일	

▶ '23년 이전 장학생

- ① 매출액은 6개월 단위로 산정
  - ② 6개월 간 매출액의 합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713,102원, '24년 기준)을 초과해야 함
- ※ 최초 매출액 발생 시점부터 인정

□ 의무종사 기업 인정 기준

- (기준 시점) 의무종사 대상기업 여부는 ㉠ 희망사다리 1유형 신규장학생 선발일(최초장학금 지급일) 이후의 ㉡ 최초 입사 시점의 기업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함
  - 신규장학생 선발일(최초장학금 지급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최초장학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함
  -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나 이후 매출액 기준 초과 또는 대기업으로 재분류된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계속 인정함
  - 매출액 기준 초과 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취업하였으나, 이후 중소기업으로 재분류된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준 >

취업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초과 중견기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견기업은 의무종사 인정</li> </ul> </li> <li>■ <b>대기업 (기업신용조회사 분류 기준)</b>                      *의무종사 인정 심사 시점 기준</li> <li>■ <b>비영리법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li> </ul> </li> <li>■ <b>국가 및 지방자치단체</b></li> <li>■ <b>「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공시한 본부기관 및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모두 의무종사 인정 제외</li> </ul> </li> <li>■ <b>「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직영기업(제5조), 지방자치단체조합(제44조), 지방공사(제49조), 지방공단(제76조), 지방공기업평가원(제78조의 4)</li> <li>-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공기업</li> </ul> </li> <li>■ <b>「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li> </ul> </li> <li>■ <b>원천징수만 하는 비사업자</b> : 아파트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등</li> <li>■ <b>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b></li> <li>■ <b>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중소·중견기업에 한함)은 재직 인정기업에 포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가족이 대표로 있는 기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가업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b></li> </ul> </li> </ul>

	<p> <b>■ 프리랜서</b>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                      -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업무위탁계약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업자, 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등은 산재, 고용보험 가입 시에도 의무종사 인정 불가                      ·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종사 인정 불가                 </p> <p> <b>■ 재직인정 제외 업종</b> (☞붙임 4.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참고)                      -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법」제2조,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예시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주점업(I), ②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R)                      - 제외 업종은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b>※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b>                      ※ 다수의 업종(업태)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의 주요 업종(업태)이 취업 인정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p>
<b>창업 지원 형</b>	<p> <b>■ 창업인정 제외 업종</b> (☞붙임 4.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참고)                      - 주요 인정제외 업종 :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이용(미용)업, 주점, 노래연습장, 부동산, 복권판매, 약국, 병원(의원), 골프장, 스키장, 그 외 재단에서 정하는 창업 인정 제외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참고) 등                      -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법」제2조,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예시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주점업(I), ②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R)                      - 제외 업종은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b>※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b> </p> <p> <b>■ 전공자의 음식점업·커피전문점·이용(미용)업·부동산업·보험업 창업 인정.</b>                      단,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병원(의원)·약국은 창업 불인정                      ※ 다수의 업종(업태)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의 주요 업종(업태)이 창업 인정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 전공자가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복수전공 관련 창업 인정 가능                 </p> <p> <b>■ 본인이 창업하지 않고 가족이 대표로 있는 기업을 인수·상속한 경우</b> </p> <p> <b>■ 정상적인 매출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b>                      - 허위 매출의 경우 의무종사 인정불가, 재단 요청시 추가소명 자료 제출 필요하며                 </p>

	<p>정상적인 매출로 확인할 수 없으면 불완전할 경우 의무종사 인정불가</p> <p>- 창업 후 매출(영업)활동을 위한 기본 사항(사업장, 물품공급내역, 영업방법)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할 수 있음</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상적인 매출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사례&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內 거래상대방 확인불가</li> </ul> </li> <li>2. 주된 영업(매출)활동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현금거래 매출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li> <li>3. 사업장 업력에 비해 매출 규모가 지나치게 소액이거나, 매출 활동 횟수가 현저하게 적은 경우</li> </ol> </div>
--	---

□ 의무종사 인정 서류

- [취업지원형] 취업·재직 기간 및 기업정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수기 심사 서류 >

구분		제출 필요 서류
재직 확인	상용 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보험 직장 가입 서류 ('24년 이후 졸업자)</li> <li>- (서류 中 택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li> <li>-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 증명서를 통해 재직 확인 가능</li> </ul>
	일용 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고용보험·산재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 내역서 등</li> </ul>
기업 정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li> <li>○ 중소·중견기업확인서</li> <li>※ 소규모 개인사업자 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추후 중소기업이 아님이 확인되거나, 의무종사 인정 불가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및 심사 결과가 변경 될 수 있음</li> </ul>
부모 기업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li> </ul>

- [창업지원형] 창업업종 및 기간, 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창업지원형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의무종사 인정
  - 창업 및 매출 사실확인을 위해 아래에 명시된 서류 외에 추가자료(물품공급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등)를 요청하거나 창업 및 매출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창업지원형 의무종사 수기 심사 서류 >**

구분		서류
필수	기업정보 및 매출액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li> <li>○ 매출액 및 영업 활동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li> <li>- (거래일자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재무제표, 소득금액증명원</li> </ul> </li> <li>※ 의무종사 이행기준 “창업지원형 매출액 인정 기준” 참고</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원천 확인</li> <li>- 소득의 원천이 창업사업활동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정 불가</li> </ul>
	가족 기업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li> </ul>
선택	지적재산권 취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재산권 취득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 : 특허증</li> <li>▶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등록증</li> <li>▶ 디자인권 : 디자인등록원부</li> </ul> </li> <li>▶ 저작권 : 저작권등록증</li> <li>▶ 상표권 : 상표등록원부</li> </ul>
	인정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종사대상일이 360일 이상</li> <li>○ 필수서류를 제출하여 의무종사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 지적재산권 취득을 증빙하고 의무종사를 추가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장학생 선발일 ~ 유예만료일 사이에 취득한 지식재산권만 인정</li> </ul> </li> </ul>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항목 중 최초로 제출된 1건만 인정 가능</li> <li>○ 특허권 6개월 인정, 기타 항목은 3개월 인정 가능</li> </ul>

**□ 증빙서류 제출**

- 장학생은 의무종사를 증빙을 위해 재단으로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 확인이 불가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서류로 판단 될 시 미인정할 수 있음
  - 제출한 증빙서류로 의무종사 확인이 불가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명시된 서류 외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상기 인정 서류 외 서류의 인정여부 및 심사결과는 재단의 판단에 따르며,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심사 당시 정보(기업구분, 제한업종, 허위서류 제출 등)와 상이할 경우 기지급된 장학금 반환(환수) 조치하며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필요시 민·형사 소송 가능
  - 유예만료일이 경과 하기 전까지 의무종사 미증빙시 재단은 장학금 환수를 위해 필요한 사후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음

- 유예만료일 이전에 의무종사를 이행하였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지연된 경우 장학금 환수 조치 가능
- 기환수금액 존재, 환수 약정, 대위변제 등 환수 내역 존재 시 의무종사 보고 불가
- ※ 환수 조치 이후 확인된 의무종사 내역은 인정 불가할 수 있음

### (3) 의무종사 유예

- 의무종사 유예는 기본 유예와 추가유예로 구분됨
  -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혜 장학금은 재단에 반환해야 함
- (기본유예) 의무종사 유예는 졸업일(졸업유예일) 다음 날부터 의무종사를 이행하지 않은 최대 900일까지 가능
  - 단, 의무종사를 이행한 기간은 의무종사 개시부터 종료 시점까지 유예 기간 산정이 일시 중지됨
- (추가유예) 질병·상해, 군입대, 임신·출산, 폐업으로 의무종사 기간의 추가유예가 필요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 및 재단 승인으로 유예 가능
  - 추가유예기간 : 신청 사유별 상이
  - 모든 추가유예 사유는 장학생 선발 이후 발생하여야 하며, 장학생 선발 일 전 또는 유예만료일 경과 이후 추가유예 신청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유예 인정 불가
- 장학생 선발일 ~ 유예만료일 사이에 추가유예 사유가 발생하여야 함

#### < 의무종사 추가유예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 >

신청사유	증빙서류	회당 최대 인정기간	최대 신청 횟수
질병/상해	① 진단서, ② 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內 진단일 및 치료기간 명시 - 상기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입퇴원 확인서 등)	6개월 (180일)	4회
임신	임신 확인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	1년 (360일)	1회
출산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1년 (360일)	1회
폐업 (취업 회사 폐업)	폐업 사실 증명서	1년 (360일)	1회

신청사유	증빙서류	회당 최대 인정기간	최대 신청 횟수
군복무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등(택1)	2년 (720일)	1회
암진단	① 진단서, ②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조직검사 결과지	2년 6개월 (900일)	별도심사
중증난치질환	① 진단서, ②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소견서	2년 6개월 (900일)	별도심사

※ (이의신청) 기업·재직 정보 오류·정정, 대학의 학적정보(졸업·졸업유예일) 정정 사유로 기본 유예기간이 실질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및 재단의 검토 후 추가 유예 기간 부여

※ 모든 추가유예 사유는 장학생 선발일 이후 발생하여야 함

○ 추가유예 상세기준 : 신청 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유예 기간 산정

### < 의무종사 추가유예 상세기준 >

구분	내용
<b>질병/상해 인정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준비, 구직활동, 직장근무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상해의 경우에만 추가유예 인정 가능</li> <li>- 질병/상해로 인하여 입원 격리되었거나 집중적인 치료를 요하는 기간(=취업준비, 구직활동, 직장근무가 불가한 일정)이 확인되어야 함</li> <li>○ 치료기간 동안 취업 및 창업이력이 확인될 경우 취업준비, 구직활동, 직장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유예 인정 불가</li> </ul>
<b>암 인정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으로 인한 추가유예 인정기준</li> <li>○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3' 구분1에서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로 확인되는 경우</li> <li>- 단, 갑상샘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암진단으로 인한 추가유예 대상에서 제외</li> <li>- 암 진단일이 장학생 졸업(유예)일 ~ 유예만료일 사이로 확인되어야 함</li> <li>- 암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암 진단 사유로 추가유예 불가능한 예시</p> <p>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여 암진단 사유로 추가유예 인정 불가</p> </div>
<b>중증난치질환 인정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난치질환으로 인한 추가유예 인정기준</li> <li>○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4의2'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로 확인되는 경우</li> <li>-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li> <li>- 중증난치질환 진단일이 장학생 졸업(유예)일 ~ 유예만료일 사이로 확인되어야 함</li> </ul>
<b>추가유예 기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빙서류는 사유발생일과 지속기간(또는 종료일)이 명시되어야 함</li> <li>- 군입대와 같이 지속기간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만 기재된 서류도 인정 가능함</li> <li>- 군복무는 복무 유형(장교, 부사관 등) 및 재복무와 관계없이 최대 2년까지 인정 가능함</li> <li>○ 회당 최대 인정기간, 요청기간, 증빙서류 상 확인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인정</li> <li>-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기간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최대 인정기간 적용 가능</li> <li>- 재직하던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최대 인정기간을 일괄 적용</li> </ul>
<b>신청 기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수 절차 이전까지만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li> </ul>
<b>심사 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종사 추가유예 심사는 신청일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름</li> <li>- 동일 사유로 추가유예를 반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점 업무처리기준에 따라서 심사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b>기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1명에 대하여 임신 사유 1회, 출산 사유 1회 신청 가능</li> <li>○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무종사 이행이 불가한 경우 추가유예 심사 및 검토 요청 가능 - 단, 교도소 입소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유는 심사대상에서 제외</li> <li>○ 폐업 사유의 추가유예는 '취업지원형' 장학생에 한함</li> </ul>

□ 의무종사 유형변경

- 장학생이 최초수혜 유형과 다르게 의무종사를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종사 인정 가능
- 단, 최초 수혜 유형과 다르게 의무종사 보고를 하거나, 유형 변경 이력이 있을 경우 의무종사 감면 불가

(4) 의무종사 감면

- (정의) 동일 기업에서 장기간 재직\*할 경우, 6개월 재직 시마다 의무종사 기간을 2개월(60일)씩 감면하는 제도
- 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2학기 이상 수혜한 학생에게만 적용
  - \* 장학생이 의무종사로 보고하여 재단에서 인정(승인)한 재직 기간
- (최대한도) 의무종사 감면은 총 6개월(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횟수에 따른 의무종사 감면일 >

(단위 : 개월)

장학금 수혜횟수 (A)	의무종사 기간 (A×6개월)	동일기업 재직 및 의무종사 감면						실제 의무종사 (a+b+c)	감면 소계
		재직 (a)	감면	재직 (b)	감면	재직 (c)	감면		
2회	12	6		4	해당 없음	-	-	10	2
3회	18	6	2	6	2	2	해당 없음	14	4
4회	24	6		6		6		2	18

\* 1개월 = 30일

(5) 장학금 조기 반환

- (정의) 장학생 요청 시 유예만료일 경과 전 장학금 조기 반환 가능
- 의무종사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일수를 반영하여 반환금액 산정
- 승인이 완료된 의무종사 심사 건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함

## 2. 직무기초교육 이수

### (1) 원칙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학기마다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함
  -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창업지원금 미지급

### (2) 직무기초교육 이수 의무

- 신규 및 계속장학생 선발 시, 취·창업지원금은 직무기초교육 이수 전에 먼저 지급하고, 해당 학기 내에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함
  - 직전 학기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당해 학기 취·창업지원금은 지급이 제한됨
    - \* '19년 1학기 이전 선발자는 변경 전 업무처리기준 적용되며,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해당 학기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취·창업지원금도 제한됨
  - 단, 졸업(졸업유예) 이전의 계속장학생 신분인 학기에 미이수 학기 직무기초교육을 보완한 경우, 미이수 학기에 대한 취·창업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금액을 의무종사로 이행할 수 있음
    - 과거에 직무기초교육이 최종 불인정된 경우, 현재 학기에 직무기초교육을 다시 이수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과거 서류 재발급·재제출 불가)

**※ [장학금 수혜 횟수 = 직무기초교육 이수 횟수] 일 경우에만, 장학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이수기간) 직무기초교육은 수혜 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함
  -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증빙자료(교육이수증 등) 제출해야 함
  - 이수 기간 구분 : (1학기) 3월~ 7월, (2학기) 9월~ 차년도 1월
    - \*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원칙에 따른 기간 구분
  - 필요 시, 최대 1개월(30일)까지 이수기간 연장 가능

- (증빙요건) 장학생은 아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① 직무기초교육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 이수 승인 가능
    - 일부 미이수한 경우 해당 학기는 미이수 처리
  - ② 장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후, 파일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파일 오등록, 파일 확인 불가 시 재제출 불가
  - ③ 교육 이수자 본인 명의로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장학생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오기재 시 교육 이수 인정 불가
    - 성명을 일부 또는 전부 오기재한 경우 기한 내에 성명을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내 인적 사항이 미기재(아이디만 기재 등) 되어 본인 확인이 불가할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④ 증빙서류는 발급기관명과 직인(또는 발급번호)이 기재되어야 함
  - ⑤ 증빙서류는 내용 변경이 불가능한 양식의 컴퓨터 파일로 제출되어야 함
    - 한글, 워드, html, 엑셀 등 변경 가능한 양식은 인정 불가
  - ⑥ 1학기는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 2학기는 차년도 1월 31일까지 이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확인 기준일자(이수일·취득일자 등)이 기재되어야 함
  - ⑦ 취·창업지원금 수혜 학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이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확인 기준일자(이수일자·취득일자 등)가 기재되어야 함

**【 직무기초교육 이수 보고(증빙 제출) 경로 】**

▶ 제출 경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이수보고서 제출 → 내용확인 선택 → 해당 학기 이수보고서 업로드

(3) 직무기초교육 이수 방법

□ 직무기초교육 유형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 후 증빙자료 제출

□ 이수 결과 확인

- 대학담당자 및 장학생은 전산시스템(관리자포털, 재단 홈페이지)을 통해 제출내역 및 결과 확인 가능
- 이수보고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재단으로 미승인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하여 이수 기간 내 다시 제출해야 함

【 직무기초교육 이수현황 확인 방법 (대학담당자용) 】

▶ 실시 경로 : 관리자 포탈 접속→ 장학→ 희망사다리장학금→ 계속장학생 관리→ 이수 보고서 관리→ 연도·학기·회차 선택 후 조회

< 직무기초교육 이수 및 증빙 안내 >

이수유형	인증처	이수 방법 및 증빙자료
직업심리 검사 (신규장학생에 한하여 1회 이수 가능)	중소벤처기 업진흥공단 또는 워크넷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성직무능력검사, NCS직업기초능력검사 - [경로]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플랫폼 - 지원서비스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업심리검사는 별도 수수료인증 발급 가능  ② (워크넷) 직업선호도검사, 구직준비도검사, 창업적성검사 등 - [경로] 워크넷 홈페이지 - 직업.진로 - 직업심리검사 ※ 워크넷 이용 시 증빙자료에 성명 등 정보기입 여부 확인 필요(아이디 입력 등 정보 오기재 시 인정 불가)
자격증 취득	자격주관 기관	○ 신규자격증 및 어학 점수 취득 - 신규자격증 : 최종합격만 인정. 합격일 또는 취득일 기준 - 어학 점수 : 성적증명서 상 응시일이 이수기간 내여야 함
자기계발 강의수강	교육기관	○ 자기계발 강의(온라인, 오프라인), 재단 추천 강의 - 수강 확인 서류(수강증, 수료증 등)가 발급 가능한 강의만 인정 - 강의시작일이 이수기간 내여야 함 - 수강증이 아닌 단순 계산 영수증은 인정 불가함 ※ 최소 8시간 이상 이수 필요  【 재단 추천 강의 이용 경로 】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직무(창업)기초교육' 하단 배너 클릭
행사참여	주관 기관	▶ 이수기간 내 취·창업 박람회, 캠프 등 행사 및 교육 참석 인정 ▶ 발급기관(직인, 발급번호), 본인 참석여부·일자를 확인 가능한 증명서 제출 - 출입증의 경우에도 상기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인정 가능
봉사활동	VMS, 1365	▶ 이수기간 내 봉사활동이 누적 8시간 이상인 경우만 인정 ▶ 인증기관(VMS 등)에서 인증받지 못한 증빙자료는 불인정
이력서 컨설팅	컨설팅 기관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취업매칭 프로그램' 참여 - [경로]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플랫폼 - 사업소개 - 취업매칭 서비스 ※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매칭서비스는 별도 수수료인증 발급 가능 ② 이수기간 내 i-ONEJOB 등을 통해 이력서 컨설팅 진행  【 i-ONE JOB 이력서 컨설팅 이용 경로 】 • 아이원잡(www.ibkonejob.co.kr)→ 로그인→ 취업지원→ 취업컨설팅→ 이력서 컨설팅→ 이력서 등록 후 컨설팅 진행 ③ 컨설팅 기관(전문가) 및 첨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출 - 본인이 작성한 이력서에 대한 첨삭만 인정(자료 상단 이름 기재) - 첨삭 내역이 없거나 첨삭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이력서는 인정 불가
OJT 등 사내교육	소속 회사	▶ 사내교육 8시간 이상 교육이수 필요 (OJT 등) ▶ 소속회사의 직인이 포함된 교육이수 증빙자료 1부 ▶ 4대 보험 가입증명 서류 1부 中 택1 제출



#### (4) 직무기초교육 이수 면제

- (정의) 장학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무기초교육 면제 가능
  - 단, 직무기초교육 이수 면제는 조건을 충족한 학기(최대 1회)에 한하여 적용함
- 직무기초교육 이수 면제 조건
  - (취업지원형) 장학생이 이수 기간 내 취업 시, 취업(기업체 재직)을 시작한 학기만 직무기초교육 이수 면제
    - 최초 1회만 면제하고, 4대 보험 가입증명서만 인정 가능
    - 단, 취업을 시작한 학기와 직무기초교육 이수가 필요한 학기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직무기초교육 면제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창업지원형) 장학생이 이수 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 시, 수상일자가 속한 학기만 직무기초교육 이수 면제
    - 최초 1회만 면제하고, 상장 및 시상기관이 발급한 확인서로 인정 가능
    - 단, 수상한 학기와 직무기초교육 이수가 필요한 학기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직무기초교육 면제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3. 학적 변동 보고

#### (1) 주요 사항

- (원칙) 장학생은 학적 변동 시 반드시 소속 대학의 담당자에게 알리고, 학적 변동 사유에 따른 장학생 자격 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
-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적 변동에 따른 장학생 자격 박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신청인 동의서, 온라인 사전교육 등에 포함)
- (대학의 역할) 대학은 학생의 학적 변동 사항(휴학·자퇴·제적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변동사항을 재단으로 알림(학적변동 사항 공문 제출)
  - 대학은 학적 변동에 따른 장학생 자격유지 여부, 장학금 반환 등에 대한 사항을 장학생에게 안내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재단 통지

【 장학생 휴학 시 재단 통지 방법 (대학담당자용) 】

- ▶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기간 내 휴학) 학사정보를 휴학유형에 따라 입력 후 재단 추천 및 결과제출
- ▶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이후 휴학) 휴학증명서 공문 제출 필수.

(2) 제적·자퇴·편입, 휴학

□ (제적·자퇴·편입) 장학생 자격 상실

- 제적 및 자퇴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대학은 학생의 학적 변동 사항을 공문 제출하고, 장학생은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등록금, 취창업 지원금)을 재단에 반환해야 함
  - 제적·자퇴한 해당 학기뿐 아니라, 이전에 지원받는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의무종사 불가)
  - 제적·자퇴한 이후 재입학 등으로 학적을 회복한다 해도 장학생 자격은 회복되지 않으며,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 학생이 장학금 및 취창업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재단은 보증보험사에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

- 편입을 할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전문학사 과정 졸업 후 편입 첫 학기에 장학금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장학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기수혜 받았던 학교의 학적 상태는 졸업으로 확인되어야 함

□ (휴학)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

- 기준 : ①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②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기간 대상
- 휴학기간이 3년 초과될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 V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1. 장학금 반환

#### □ 정의

- 업무처리기준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약정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생이 자발적으로 반환 금액을 재단에 상환하는 것

#### (1) 장학금 반환 사유

#### □ 재학 중 반환 사유 : 자격 상실, 영구 탈락, 중복 지원

##### ① 자퇴, 제적 등 학적 변동으로 소속 대학 학적이 소멸된 경우

- 자퇴/제적 이후 학적을 회복하더라도 장학금 수혜 이후 최초 발생한 자퇴/제적일을 기준으로 장학금 환수 진행

##### ② 장학금 수혜 후 해당 학기에 휴학한 경우

-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기에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반환하여야 함

※ 차학기 계속장학생 선발 이전까지 미반환 시, 수혜횟수 차감되어 장학생별 잔여 수혜가능횟수에 따라 지급 종료될 수 있음

##### ③ 계속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장학생 선발기준 미 충족한 경우(성적, 학적 등)

##### ④ 장학금 포기 신청하는 경우(포기 확인서 제출)

##### ⑤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지급종료 학기까지 미이수 학기 직무기초교육을 보완한 경우 미이수 학기에 대한 취·창업지원금 반환 면제 가능

##### ⑥ 장학금 수혜 이후 학점감소로 전체 등록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분만큼 해당 장학금 반환

※ 최종 등록금액으로 수납원장 수정 필수

##### ⑦ 등록금 범위를 넘어선 학자금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재학 중 반환 사유 발생 시 처리 기준】**

- 재학 중 반환 사유 중 일부는 장학금 반환 외에도 의무종사 선택 가능
  - 자퇴, 제적 또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수혜받은 장학금은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하며 반환만 가능
  - 장학금 수혜 후 해당학기 휴학 시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하며 장학금 반환만 가능
  - 오선발 및 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하며 장학금 반환만 가능
  - 중복지원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하며 장학금 반환만 가능
- 수혜 학기의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해당 학기 등록금 지원 잔액이 0원인 경우, 해당 학기 취창업지원금도 반환하여야 함(직무기초교육 이수여부와 무관하게 반환)

< 장학금 포기 신청하는 경우, 업무처리 기준 >

- ▶ 정의 : 대학 및 재단 심사 결과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의 자발적 요청으로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것
- ▶ 신청 방법 : 포기확인서 작성 후, 소속 대학으로 제출
- ▶ 의무사항 : 포기 시 장학금 반환 또는 졸업 후 의무종사 중 선택 가능
  - 장학금 반환 : 수혜한 장학금(등록금, 취업·창업지원금)을 대학을 통해 재단으로 반환
  - 의무종사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동안 중소기업에 재직
    - \* 의무종사 인정 기준 참고
- ▶ 참여 포기에 따른 장학금 반환
  - 반환절차 : 학생의 포기확인서 공문 제출(대학→재단) 후 장학금 반환
  - 대학은 학생으로부터 장학금 전액(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을 회수하고, 재단으로 반환
  - 학생이 직접 반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대학이 학생에게 반환계좌 안내 가능

【 장학금 포기 시 반환금 입금 방법 (대학담당자용) 】

- ▶ 반환 경로 : 관리자 포탈 접속 → 공통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반환금관리 → 개별 등록 선택 → 포기학생정보 및 반환정보 입력 후 저장 → 채번된 가상계좌로 반환금 입금

□ 졸업 후 반환 사유

- ① 의무종사 유예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②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 ③ 재학 중 발생한 반환 사유를 졸업 전까지 해소하지 못한 경우

□ 기타 반환 사유

- 오선발(오지급) : 허위정보 기재, 심사 오류(수혜 횟수 초과 등)

## (2) 반환 기한

### □ 재학 중 반환

- 재학 중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 사유 발생 즉시 장학금 반환을 원칙으로 함
  -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기에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반환하여야 함
  - 다만, 직무기초미이수로 인한 취창업지원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지급종료 학기까지 미이수 학기 직무기초교육을 보완한 경우 미이수 학기에 대한 취·창업지원금 반환 불필요

### □ 졸업 후 반환

- 의무종사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의무종사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 즉시 기수혜받은 장학금을 재단으로 반환하여야 함
  - 의무종사 이행 일수에 따라 장학금 반환금액은 달라 질 수 있음

$$\text{반환필요금액} = \text{총 수혜 장학금} \times \frac{(\text{총 의무종사일수} - \text{의무종사이행일수})}{\text{총 의무종사일수}}$$

- 취·창업지원금의 경우 교육 미이수 할 경우 즉시 전액 반환

**※ 전액을 미반환할 경우, 장학금 환수 절차 개시**

### □ 기타 반환 : 사유 발생 시 즉시

## (3) 반환 방법

### □ 재학 중 반환

- (자발적 상환) 재단에서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고객에게 안내 후 상환
- (대학을 통한 상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관련 변동사항 공문 제출 → 학생별 가상계좌 채번 → 반환금 입금
  - 장학금 관련 변동사항 : 학적변동, 장학금 포기신청, 휴학 등
- 학자금 대출로 상환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반환 절차
  - 가. 대학은 대상자 및 상환 취소 사유 등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
  - 나. 재단은 상환취소 가능 여부 검토 후, 반환 계좌로 대출 상환 취소금 입금처리

다. 자퇴로 인한 상환취소 시, 등록금 환불금으로 장학금 반환금을 대체하여 반환처리 가능

< 학자금 대출 상환 취소 시 유의 사항 >

- ◆ 다음의 경우 상환취소 요청 시 장학생의 동의가 필요
  - 학적 변동 외 사유로 상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과거 상환 내역을 취소하는 경우
  - 장학금 상환 이후 학생의 전환대출로 대출상품이 변경되는 경우
-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2년 이내 건만 대출상환 취소 가능
  - 과거 년도 대출을 일괄 취소할 경우,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대상이 됨
- ◆ 농어촌학자금용자는 부분 상환취소 가능

졸업 후 반환

- (자발적 상환) 재단에서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고객에게 안내 후 상환

(4) 반환 금액 산정 기준

휴학 : 해당 학기 장학금 지급액 전액

- 장학금 수혜 후 해당 학기에 휴학한 경우 즉시 반환

자퇴·제적 : 기 수혜금액 전액 반환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 미이수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 전액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수혜 받은 취·창업지원금은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하며, 반환만 가능

의무종사 미이행 : 기 수혜금액 전액

- 의무종사 일부 이행 시, 의무종사 이행 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금액 산정 기준 >

반환 유형		반환 금액
1	휴학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2	자퇴, 제적	기 수혜금액 전액
3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미이수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 전액
4	의무종사 미이행	기 수혜금액 전액
5	의무종사 일부만 이행	총 수혜 장학금 × $\frac{(\text{총 의무종사 일수} - \text{의무종사 이행 일수})}{\text{총 의무종사 일수}}$

\* 잔여 의무종사 일수 = (총 의무종사 일수 - 의무종사 이행 일수)

## 2. 장학금 환수

### □ 정의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것

### (1) 장학금 환수 사유

#### ① 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자

- 의무종사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의무종사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 ② 자퇴/제적자

- 장학금 수혜 이후 자퇴/제적 이력이 확인 될 경우
- 자퇴/제적 이후 학적을 회복하더라도 장학금 수혜 이후 최초 발생한 자퇴/제적일을 기준으로 장학금 환수

#### ③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확인 시 장학금 환수
- 반환 내용 :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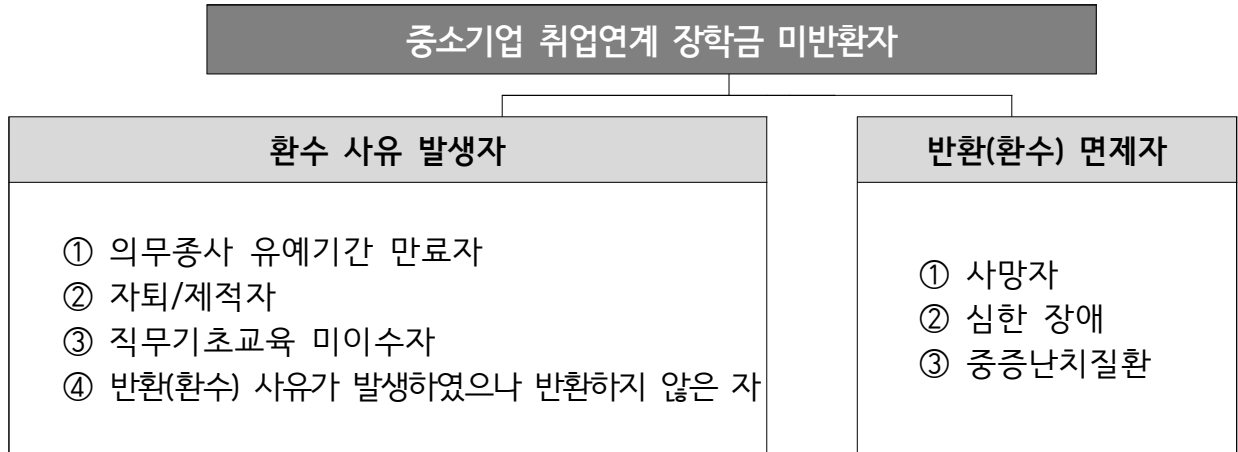
#### ④ 그 외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

- 장학금 수혜 이후 해당 학기에 휴학한 경우
- 개인회생/파산 채권 목록에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포함하였을 경우 (장학생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 청구 또는 회생/파산 절차에 따라 장학금 환수 가능
- 그 외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2) 환수 방법

① 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환수



**보험금 청구 대상자(A) 및 청구 불가자(B)로 재분류하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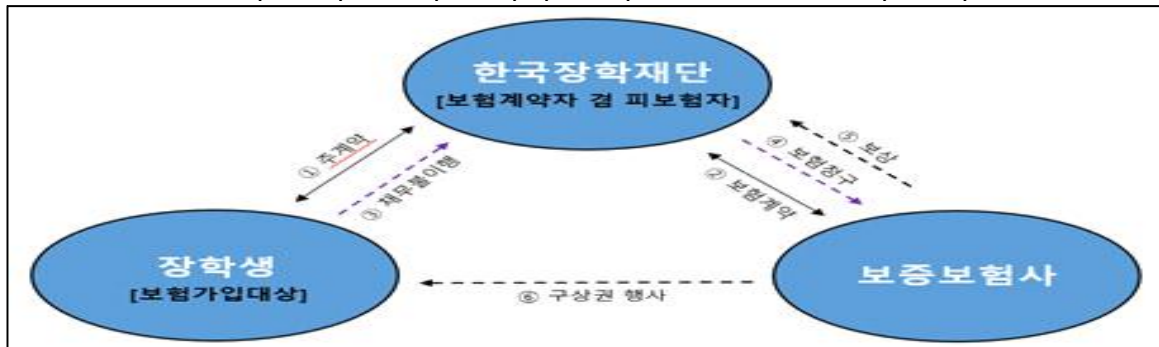
- 보험금 청구 대상자(A) : 보증보험에 가입되었고 보험청구일이 보험사고일 (장학금 환수 사유 발생일)이후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 보증보험사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채권 회수 가능
    - ※ 보험(대위변제) 청구 이후에는 재단을 통한 장학금 반환 불가**
  - 청구 불가자(B) : 보증보험을 미가입\*하여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자 혹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 미가입 사유 : '16년 이전 장학금 수혜자

- 【 대위변제 청구 시 준비서류(보험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①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제공),    ② 법인인감증명서(재단)
  - ③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재단),    ④ 청구대상자 장학금 수혜정보 및 연도별 수혜약정서
  - ⑤ 청구대상자 수혜학기별 보험증권번호,    ⑥ 청구대상자 손해입증자료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이행신용보증보험제도 >

- ▶ **(정의)**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증보험제도
  - 재단과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주체가 되는 보증보험 계약
  - 장학생이 환수절차 불이행 시, 보증보험사는 재단으로 반환금을 대납(대위)하고 보험사는 장학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
    - \* 중소·중견기업 재직의무, 직무기초교육 이수 등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이행신용보증보험제도 개관 >



\* 재단이 보험사로 보험금(대위변제) 청구 시 장학생의 신용도가 하락됨

- ▶ **(효과)** 보증보험은 다수의 장학생과 정형화된 계약을 대량·반복적으로 체결하는 재단의 손실 위험을 담보하는데 효과적임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보증보험제도 운영 경과 >

'13년 1학기	'16년 1학기	'18년 1학기	'18년 2학기	'19년 2학기	'20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신설	<b>보증보험제도 도입</b> (신규장학생 대상)	재단이 보증보험료 대납 (신규장학생 대상)	고졸 후 학습자 장학사업 신설 (희망사다리Ⅱ유형)	Ⅱ유형 보증보험제도 추가 도입 (재단이 보험료 대납)	<b>보증보험 계약주체 변경</b> (장학생 → 재단)

- ▶ **(관리)** 보험가입 시마다 학생별 보험증권 번호를 수령하여 데이터 입력
  - 학생별 보험 가입 건수별(증권번호별)로 보험 청구 후 개별 수령(입금)

## ② 재단 직접 환수

### ○ 환수 근거

- 장학금 수혜시 고객이 서명한 「장학금 수혜 약정서」, 「장학생 의무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환수 진행

#### 【희망사다리 I 유형 장학금 수혜약정서】

5. 본인은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단에 반환금액을 성실히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기한 내 미반환 시 장학금 환수조치가 진행됨을 인지합니다.

- 1) 의무종사 유예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2)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3)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 4)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등 장학생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 5) 학적변동(자퇴, 제적)이 발생한 경우
  - 자퇴 및 제적 등 학적 변동으로 소속 대학 학적이 소멸된 경우
  - ※ 자퇴·제적 이후 학적을 회복하더라도 최초발생한 자퇴·제적일을 기준으로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 필요
- 6) 장학금 수혜 후 해당 학기 휴학이 발생한 경우
- 7) 직무(창업)기초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 8) 장학생 오선발 또는 장학금 오지급된 경우
- 9)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에서 재직이 확인되는 경우
- 10) 등록금 범위를 넘어선 학자금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 11) 기타 장학금 반환을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장학생 의무에 관한 사항 >

**제6조(장학금 반환)** 장학생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및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및 취·창업지원금을 재단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의무종사 유예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3.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4.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등 장학생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5. 휴학자는 휴학 학기에 수혜한 장학금 반환 필요
6. 자퇴·제적자는 자격 상실 및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
  - 자퇴 및 제적의 경우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해야하며 의무종사 대체 불가
  - ※ 자퇴·제적 이후 학적을 회복하더라도 최초발생한 자퇴·제적일을 기준으로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 필요

### ○ 환수 대상

- 장학금 환수(반환) 사유 발생자 중 지급신용보험 청구 불가자

### ○ 환수 방법

- 재단은 장학금 환수를 위해 법적조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

③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 환수 근거 : 「공공재정환수법」 제6조
  - 동법 시행령,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
- 환수 대상 :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로 부정 청구를 한 자
  - 부정 청구 : ❶허위 청구, ❷과다 청구, ❸목적외사용, ❹오지급
- 환수 방법 : 「공공재정환수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반환

(3) 환수 금액 산정

- 자퇴/제적 : 기 수혜금액 전액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 미이수학기 취창업지원금(200만원) 전액
- 의무종사 미이행 : 기 수혜금액 전액
  - 의무종사 일부 이행 시, 의무종사 이행 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 금액 산정 기준 >

환수 유형		환수 금액
1	자퇴, 제적	기 수혜금액 전액
2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미이수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 전액
3	의무종사 미이행	기 수혜금액 전액
4	의무종사 일부만 이행	총 수혜 장학금 × $\frac{(\text{총 의무종사 일수} - \text{의무종사 이행 일수})}{\text{총 의무종사 일수}}$
5	휴학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 3.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 □ 정의

- 장학금 수혜 이후 사망, 장애, 질병으로 의무종사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에 장학금 반환(환수)을 면제하는 것
  - 장학금 수혜 당시에는 의무종사를 이행할 객관적인 여건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반환(환수) 면제 가능

#### □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적용 기준

##### ①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

-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상 장학생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종료자’ 처리하고 미반환(미환수) 금액에 한하여 면제 처리함
- 장학생 사망 관련 업무처리는 재단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장학생 사망 사실을 알린 일자를 기준으로 함

#####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구분되는 경우

##### ③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4의2’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

##### ④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장학금 반환(환수)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 받은 경우

**【 장학금 환수 면제 신청 방법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

- ▶ 신청 경로: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http://www.kosaf.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 이의신청 → 이의신청등록

#### 4.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운영위원회

##### □ 운영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위원회는 교육부 담당자, 재단 담당부서장, 내·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7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재단 담당 상임이사, 간사는 재단 담당 팀장으로 보함
  - 위원장은 장학사업, 중소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보함)
  -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당사자·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을 요청할 수 있음

##### □ 운영위원회 운영

- (기능) 의무종사, 반환 및 환수 등 세부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 (개최) 재단담당자는 운영위원회 개최 필요 시 소집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개최여부 검토 후 승인
- (심의·의결사항)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 그 밖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대면 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서면으로 대체 가능

**본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붙임**

**별첨 파일 참조**